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8허3758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비즈제이
피 고 주식회사 삼성웰비스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1.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30. 2017당24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2) 우선권주장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4. 10. 27./2015. 9. 16./2016. 8. 16./
제1650122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대걸레 막대와, 걸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와, 상기 대걸레 막대에 설치되고 상기 대걸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브와,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가 관통하는 개구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에 장착된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대걸레 막대에는 가이드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에는 양측으로 연장하는 가이드 날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헤드와 상기 조정 슬리브는 2개의 연결 스트립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2개의 연결 스트립의 마주하는 측면에는 위치결정 스트립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은 상기 가이드 날개와 상기 대걸레 막대 사이에 끼워서 설치되어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이 상기 가이드 날개의 위치 한정 하에서 상기 대걸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는 상기 개구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에 세워 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를 통하여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의 상기 조정 헤드와 접근하는 일측에는 위치결정 돌출점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위치결정 돌출점이 상기 가이드 날 개에 저촉됨으로써 상기 조정 슬리브의 최고 슬라이딩 위치가 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청구항 3 내지 8】 (각 기재 생략)

4) 특허권자 : 자싱 잭슨 트레블 프로덕츠 코., 엘티디

5) 전용실시권자 : 피고

6) 발명의 개요

① 기술 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판형 대걸레의 걸레가 자체탈수 가능한 대걸레의 기본 구조는 대걸레 막대에 슬라이딩 가능한 하나의 조정 슬리브가 설치되어 있고, 조정 슬리브는 연결 로드를 통하여 조정 헤드와 연결되며, 조정 헤드에 하나의 개구가 개설되어 있고, 개구에는 탈수 롤러가 구비되어 있는 바, 판형 대걸레 헤드가 개구를 통과하여 조정 슬리브를 위로 당기면 탈수 롤러는 판형 대걸레 헤드에 씌워진 걸레의 수분을 짜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는 물을 짜낸 후, 판형 대걸레를 세울 수 없어, 판형 대걸레의 헤드를 수평하게 지면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걸레가 여전히 지면과 접촉되므로 걸레가 쉽게 마르지 못하고 더러워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문단번호 [0002]).

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의 전술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을 짜낸 후 걸레가 쉽게 마르고 더러워지기 쉽지 않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를 제공한다(문단

번호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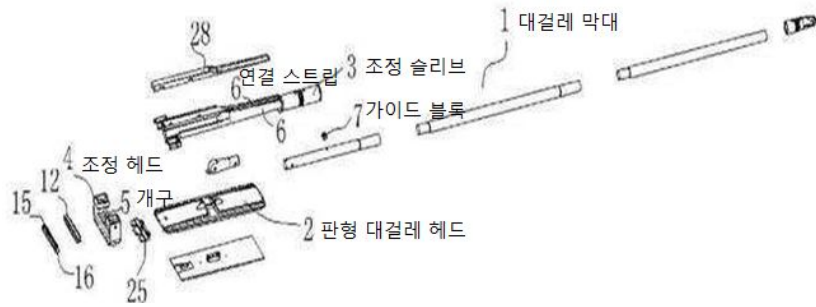
③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은 대걸레 막대(1)와, 배면에 걸레를 설치할 수 있는 판형 대걸레 헤드(2)를 포함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1)의 하단과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활동되게 연결되며, 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상하로 슬라이딩 가능한 조정 슬리브(3)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조정 슬리브(3)의 하단에는 조정 헤드(4)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헤드(4)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면에는 판형 대걸레 헤드(2) 배면의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를 상기 대걸레 막대(1)와 평행되게 회전시킨 후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로 들어갈 수 있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에서 벗어나 수평 상태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의 하단은 상기 개구(5)에 들어가게 되며, 상기 조정 슬리브(3)를 위로 당길 때 상기 탈수 유닛에 의해 판형 대걸레 헤드(2) 배면의 걸레의 수분을 짜낸다(문단번호 [0004], [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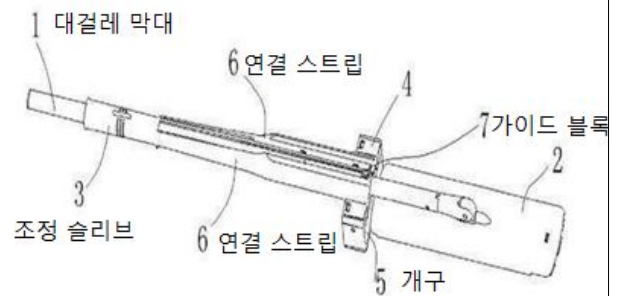
상기 조정 헤드(4)는 횡방향으로 연장되어 상기 조정 헤드(4)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상기 조정 헤드(4)는 베이스로 검용됨으로써 대걸레 막대(1)와 평행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2)의 하단을 상기 삽입구 내에 삽입시키고 대걸레를 세워 놓을 수 있게 된다(문단번호 [0005], [0025]).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 사이는 좌우 2개의 연결 스트립(6)을 통하여 일체로 연결되어 구조가 더욱 안정적이고 튼튼하며, 좌우 2개의 연결 스트립 사이는 장식 커버(28)를 장착함으로써 더욱 미관적이고, 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 블록(7)은 각각 좌우 양측으로 가이드 날개(8)가 연장되며, 상기 2개의 연결 스트립(6)은 각각 상기 가이드 날개(8)의 하측까지 연장되는 위치결정 스트립(9)을 구비한다(문단번호 [0006], [0026]).

가이드 블록(7)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이드 날개(8)는 위치결정 스트립(9)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7)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되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한다. 조정 헤드(4)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조정 슬리브(3)의



[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분해도



[도 4] 조정 헤드의 위치가 높을 때 상태도

하단면은 가이드 블록(7)에 걸릴 수 있어 일정한 위치한정 작용을 한다. 물론, 조정 헤드(4)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조정 슬리브(3)의 하단면은 가이드 블록에 걸리지 않고 단지 조정 헤드(4)를 지면에 놓는 것만으로도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의 전체적인 위치결정을 구현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6]).



[도 3] 조정 헤드의 위치가 낮을 때 상태도

나아가, 상기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슬라이딩될 때 상기 조정 헤드(4) 및 조정 슬리브(3)는 위치결정 유닛에 의해 위치 결정된다(문단번호 [0007]).

상기 위치결정 유닛의 구체적인 구조는, 상기 연결 스트립(6)의 하단에 위치결정 돌출점(10)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상기 위치결정 돌출점(10)은 상기 가이드 날개(8)의 배면과 저촉한다(문단번호 [0027]).



[도 5] 가이드 블록 부위의 대결레 막대의 횡단면도

조정 슬리브(3)가 위로 슬라이딩하여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연결 스트립의 위치결정 돌출점(10)은 가이드 블록의 가이드 날개(8)의 배면과 저촉하고 양자가 마찰 및 압착되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를 아래로 누르고자 할 때에는, 힘껏 내려 누르면 된다. 물론, 위치결정 유닛은 기타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바, 예를 들어 걸쇠를 사용하거나 또는 대결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 슬리브에 위치결정 홈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홈에 체결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7]).

본 발명에 가이드 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상기 가이드 블록은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여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한다. 조정 헤드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조정 슬리브의 하단면은 가이드 블록에 걸릴 수 있어 일정한 위치한정 작용을 한다. 물론, 조정 헤드가 낮은 위치에 처할 때, 조정 슬리브의 하단면이 가이드 블록에 걸리지 않고 단지 조정 헤드를 지면에 놓는 것만으로도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위치결정을 구현할 수 있다. 조정 슬리브가 위로 슬라이딩하여 조정 헤드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연결 스트립의 위치결정 돌출점이 가이드 블록의 가이드 날개의 배면과 저촉하고,

양자가 마찰 및 압착되어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를 아래로 누르고자 할 때에는, 힘껏 내려 누르면 된다(문단번호 [0017]).

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가진다. 1. 탈수 완료 후, 전체 대걸레(판형 대걸레 헤드를 포함함)를 세워 놓을 수 있어, 판형 대걸레 헤드에 장착된 걸레를 쉽게 말릴 수 있고, 지면과의 재접촉으로 인해 걸레가 다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상하 슬라이딩에 대한 가이드 유닛으로 가이드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 안내성, 원활성이 양호하다. 3. 탈수 시에 판형 대걸레 헤드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고, 가이드 리브에 의해 판형 대걸레 헤드가 옆으로 뒤집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탈수 시에 걸레의 두께 및 더러운 정도에 따라 탈수 스크레이퍼 및 브러시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5. 걸레의 장착이 매우 간편하고, 장착 완료 후에도 걸레가 쉽게 이탈되지 않는다(문단번호 [0021]).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1호증의 별지 2)

원고가 실시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¹⁾.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8.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실제 형상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용어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가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은 오로지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구체적인 대상물을 특정하여 작성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제시한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 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은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제품의 해당 부분의 명칭을 단순히 변경하거나 그 구성이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가 특정한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별도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갑 제4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정한 별지 기재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2451호로 심리한 후, 2018. 3. 30. "확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3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구성요소
2를 균등관계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블록 및 위치결정 스트립은 슬라이
딩을 원활하게 안내하는 것인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 대응
하는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조정 헤드 및 조정 슬리브의 슬라
이딩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라이딩이 종료하는 시점에 비로소 대걸레 막대에 설치
된 가이드 블록(7b)이 조정 슬리브(3) 내부에 설치된 홈에 체결되어 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으로서 슬라이딩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
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문언적으로 상이할 뿐 아니라 균등관계에 있
지도 아니한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

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1	대걸레 막대와, 걸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와, 상기 대걸레 막대에 설치되고 상기 대걸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브와,	대걸레 막대(1)와, 걸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2)와, 상기 대걸레 막대(1)에 설치되고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가 관통하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5)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에 장착된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W)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3)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4)를 포함하고,</p>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가 관통하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5)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에 장착된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W)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3)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4)를 포함하고,</p>
2	<p>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a, 7b)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 블록(7b)의 정상부에는 양측으로 연장하는 가이드 날개(8)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는 2개의 연결 스트립(6)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2개의 연결 스트립(6)의 마주하는 측면에는 위치결정 스트립(9)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9)은 상기 가이드 날개(8)와 상기 대걸레 막대(1) 사이에 끼워서 설치되어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9)이 상기 가이드 날개(8)의 위치 한정 하에서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고,</p>	<p>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a, 7b)이 설치되고, 상기 가이드 블록(7b)의 양측에는 가이드 날개부(8)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는 연결 스트립(6)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조정 슬리브(3) 내부에는 위치결정부(9)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부(9)는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되고,</p>
3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W)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4)에 세워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를 통하여</p>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W)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4)에 세워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를 통하여</p>

	여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3)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3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대걸레 막대, 판형 대걸레 헤드, 조정 슬리브, 판형 대걸레 헤드가 관통하는 개구, 탈수 유닛, 조정 슬리브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가 설치되어 있고, 판형 대걸레 헤드가 개구를 관통하여 탈수 유닛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조정 헤드에 세워 놓이게 되고 조정 헤드를 통해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점에서 동일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대걸레 막대에 가이드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가 연결 스트립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에 양측으로 연장하는 가이드 날개가 형성되고,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는 2개의 연결 스트립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며, 2개의 연결 스트립의 마주하는 측면에 위치결정 스트립이 설치되고, 위치결정 스트립이 가이드 날개와 대걸레 막대 사이에 끼워서 설치되어 위치결정 스트립이 가이드 날개의 위치 한정 하에서 대걸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단일의 연결스트립에 의해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가 고정되게 연결되

고,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 및 위치조정 스트립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4) 차이점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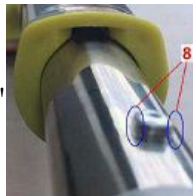
가)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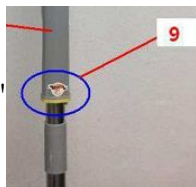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는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가이드 블록(7b) 양측에 가이드 날개부(8)가 구비되어 있고, 조정 슬리브(3)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대결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는 위치결정부(9)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대응 사진인 도 6에 '8'과 같이 가이드 날개부(8)가,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대응 사진인 도 5에 '9'와 같이 위치결정부(9)가 각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8) 및 위치결정부(9)가 각각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에 양측으로 연장하여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8)는 가이드 블록(7b)의 정상부가 아닌 가이드 블록(7b)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다.

② 구성요소 2의 위치결정 스트립은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를 고정되게 연결하는 2개의 연결 스트립의 마주하는 측면에 설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단일의 연결스트립에 의해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가 고정되게 연결되고, 위치결정부(9)는 조정 슬리브 내부에 홈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위치결정 스트립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 가이드 날개부(8) 및 조정 슬리브 내부에 설치된 위치결정부(9)는 조정 슬리브(3)와 조정 헤드(4)가 슬라이딩을 하는 동안 어떠한 구성요소와도 접촉하지 않을 뿐더러 가이드 날개부(8)가 위치결정부(9)와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7b)이 조정 슬리브(3)와 조정 헤드(4)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위치결정 스트립의 조정 헤드와 접근하는 일측에는 위치결정 돌출점이 설치되어 있고, 위치결정 돌출점이 가이드 날개에 저촉됨으로써 조정 슬리브의 최고 슬라이딩 위치가 한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조정 슬리브의 최고 슬라이딩 위치를 한정하는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은 대걸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슬리브에

위치결정 홈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홈에 체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까지 슬라이딩될 때, 상기 조정 헤드(4) 및 상기 조정 슬리브(3)는 위치결정 유닛에 의해 위치결정된다. 상기 위치결정 유닛의 구체적인 구조는, 상기 연결 스트립(6)의 하단에 위치결정 돌출점(10)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상기 위치결정 돌출점(10)은 상기 가이드 날개(8)의 배면과 저촉한다. 조정 슬리브(3)가 위로 슬라이딩하여 조정 헤드(4)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연결 스트립의 위치결정 돌출점(10)은 가이드 블록의 가이드 날개(8)의 배면과 저촉하고 양자가 마찰 및 압착되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를 아래로 누르고자 할 때에는, 힘껏 내려 누르면 된다. 물론, 위치결정 유닛은 기타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바, 예를 들어 걸쇠를 사용하거나 또는 대걸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 슬리브에 위치결정 홈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처할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홈에 체결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문단 번호 [0027]).

그런데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피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조정 슬리브(3)에 설치된 위치결정부(9)는 U자 모양의 홈에 가이드 블록(7b)이 삽입 결합되어 조정 슬리브가 최상부에서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가이드 블록(7b) 양측에 구비된 '가이드 날개부(8)'라고 명명된 구성도 대걸레 막대에 설치된 돌출된 부분인 가이드 블록(7b)을 통해 조정 슬리브 상단부 내측면에 형성된 홈인 위치결정부(9)에 착탈 가능하도록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위치결정부(9)와 체결되어 조정 슬리브(3)의 최고 위치를 한

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 중 하나인 '대결레 막대에 설치된 위치결정 돌출점'과 '조정슬리브에 설치된 위치결정 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슬라이딩을 정지시키기 위한 구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 블록,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안내하는 구성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와 위치결정 스트립은 가이드 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서로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제공한다.

- 가이드 블록(7)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이드 날개(8)는 위치결정 스트립(9)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7)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되어 조정 슬리브(3), 조정 헤드(4)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한다(문단번호 [0026]).
-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가진다. (중략) 2.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상하 슬라이딩에 대한 가이드 유닛으로 가이드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조정 슬리브,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 안내성, 원활성이 양호하다(문단번호 [0021]).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와 위치결정 스트립에 대응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

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위치결정부(9)의 U자형 홈과 가이드 블록(7b)이 판형 대결레 헤드(2)가 조정 헤드(4)를 이탈하여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조정 슬리브(3)와 조정 헤드(4)가 일정 방향으로 원활하게 슬라이딩 되도록 하고,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비록 짧은 거리라도 가이드 블록(7b)이 위치결정부(9)의 U자형 홈에 명백하게 슬라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치결정 스트립은 가이드 날개와 대결레 막대 사이에 레일과 같이 끼워서 설치됨으로써 가이드 날개의 위치 한정 하에서 대결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도록 되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과 위치결정부(9)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별도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된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대결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슬리브에 위치결정 홈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홈에 체결시키는 구성에 해당하므로,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가이드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치결정 스트립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확인대상발명에서 가이드 날개부(8)로 명명된 구성 역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 양측에 구비된 탄성을 가진 부재로서 조정 슬리브 내에 설치된 위치결정부(9)에 패인 U자형 홈에 끼워지면서 고정되는 기능을 하는 구성일 뿐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가이드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는 점, ④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가이드 날개가 위치결정 스트립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되는 반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에서 슬라이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리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이 위치결정부(9)의 U자형 홈에 삽입되기까지의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와 위치결정 스트립은 가이드 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서로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7b), 가이드 날개부(8) 및 위치결정부(9)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하고 일정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작용효과가 다르다.

이처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와 작용효과가 다르고, 또한 이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확

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구성요소 2가 치환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검토결과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와 관련하여 그 구성이 상이하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발명의 명칭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나. 도면의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인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의 전체외관을 나타내는 정면도 사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인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의 전체외관을 나타내는 측면도 사진이다.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세부 구성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조정 슬리브(3) 및 가이드 블록(7a) 등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조정 헤드(4), 조정 슬리브(3), 연결 스트립(6) 및 위치결정부(9)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6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8)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하기 도 1 내지 도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체탈수가 가능한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전체 대걸레를 세워 놓을 수 있으며 판형 대걸레 헤드에 장착된 걸레를 쉽게 말릴 수 있고 지면과의 재접촉으로 인해 걸레가 다시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에 관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구비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결레 막대(1)와,

결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결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결레 헤드(2)와,

상기 대결레 막대(1)에 설치되고 상기 대결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브(3)와,

상기 판형 대결레 헤드(2)가 관통하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5)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결레 헤드(2)에 장착된 결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W)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3)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4)를 포함하고,

상기 대결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a, 7b)이 설치되고,

상기 가이드 블록(7b) 양측에는 가이드 날개부(8)가 구비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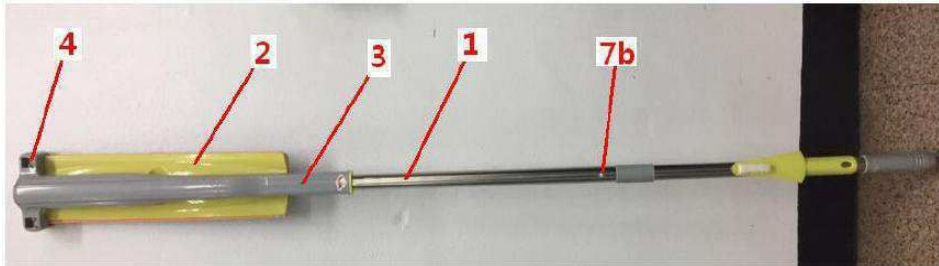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는 연결 스트립(6)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조정 슬리브(3) 내부에는 위치결정부(9)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부(9)는 상기 대결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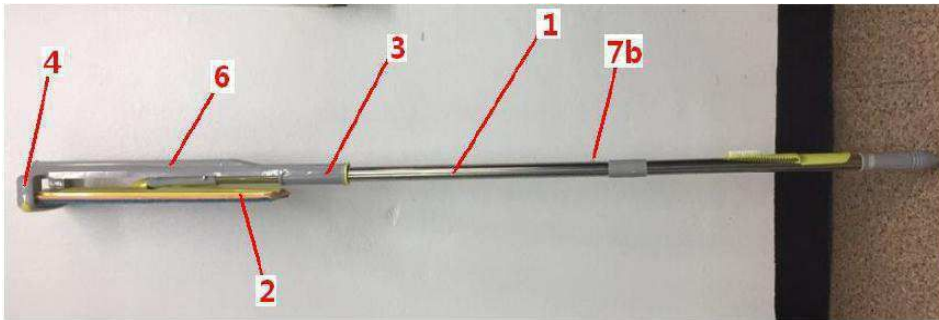
상기 판형 대결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4)에 세워 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를 통하여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결레.』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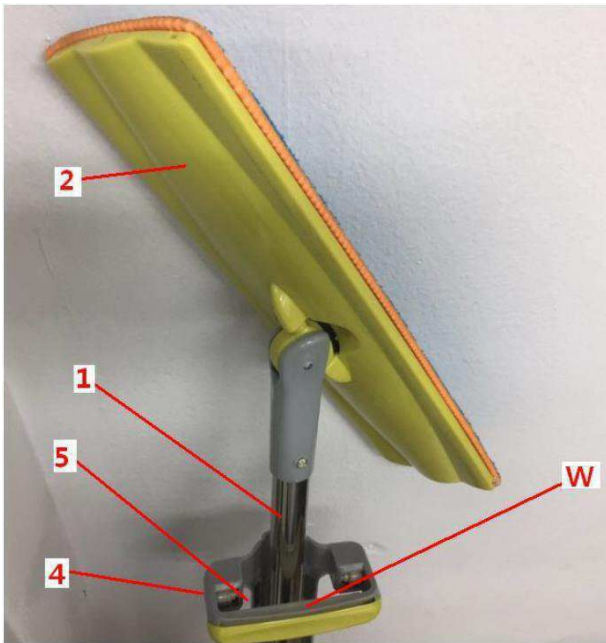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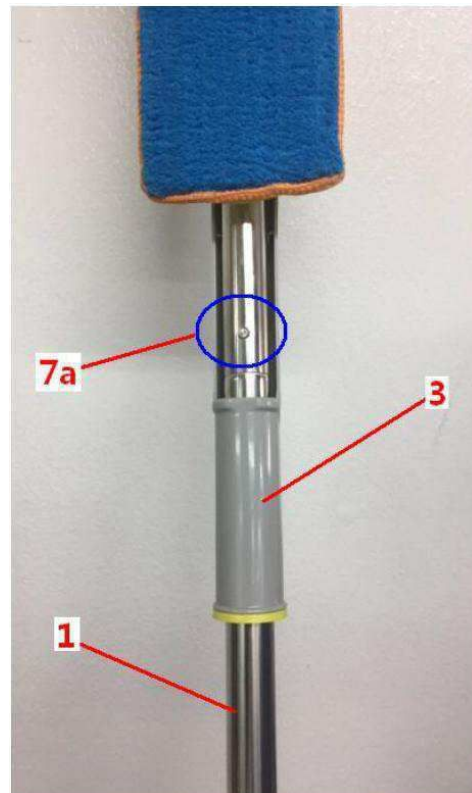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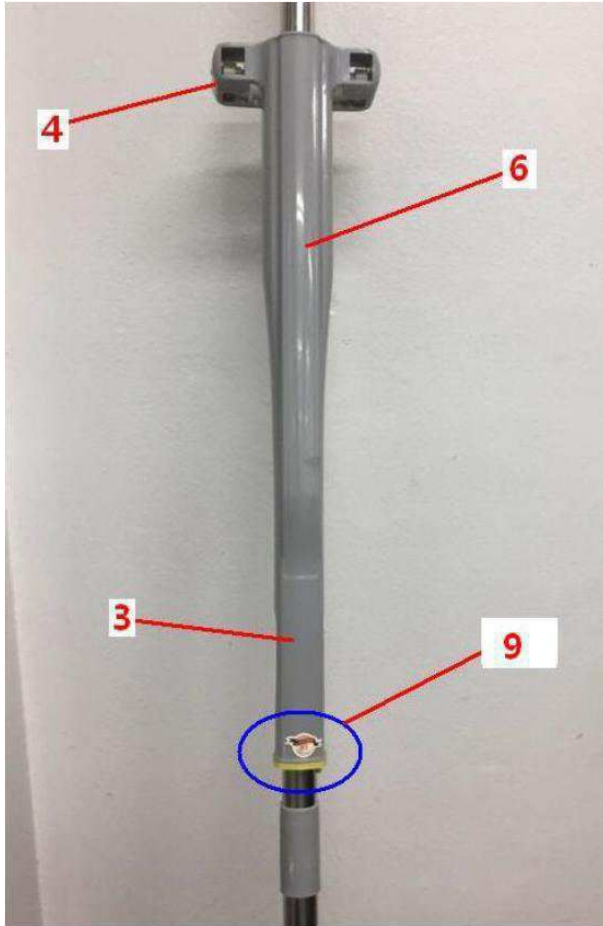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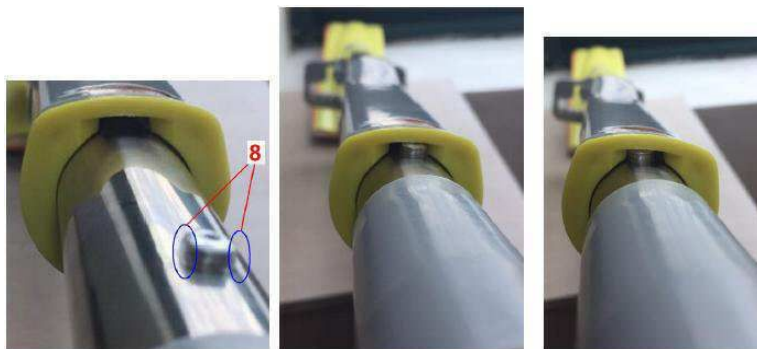
[도 4]



[도 5]



[도 6]



끝.